

수신 : 경기도 광주시 감사실

발신(민원인) : [REDACTED]

제목 : '쿠팡 곤지암 1센터' 복도폭 재조사 추가 질의

귀 시가 행정을 번복하다 보니 의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의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복도가 일반 복도인지, 피난시설에 해당되는 피난 복도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2. 해당 센터가 어느 시기부터 법 위반을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귀 시에서는 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건축주(사용자)가 그 이후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복도폭 0.2m 축소는 단순 오차가 아닌 피난 안전 기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경으로 화재 등의 비상 상황 시 병목 현상을 유발하여 인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한 상태를 건축주(사용자) 및 관리 감독기관이 장기간 방치한 것입니다.

특히 복도의 하부가 1.2m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설계, 인허가, 사용승인 당시 건축주(사용자)가 법적인 조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청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거나, 건축주(사용자)가 임의로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무단 변경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3.해당 센터에 내린 귀 시의 시정명령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이 어렵다면 공문에 어떤 법적 근거를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요청 이유는,

귀 시의 출장결과 보고서(2026.1.7.)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건축법> 제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위반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금번 재조사 요구에

복도폭 유효너비 확보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의 판단 결과 변경(2025. 5월 : 위법사항 없음 → 2026. 1월 : 위법사항 발견)은 「건축법」등 관련 규정 상 ‘거실’의 범위에 대한 상급기관과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복도가 불법으로 판단된 근거가 귀시가 답변대로 ‘거실’ 범위에 대한 상급기관과의 해석 차이인지, ‘피난 복도’라는 이유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겠습니다.

4.해당 센터의 불법 사실에 대해 더 이상의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귀 시가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지를 앓길 기대합니다.

5.해당 센터 및 귀 시에 위치한 다른 쿠팡 물류센터들의 적층식 랙 위법 사항 신고에 대해서 언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